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3가단861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## 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0. 11.

판결 선고2024. 11. 8.

## 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59,209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2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들은 공동하여 40,084,000원, 피고 B는 19,125,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#### 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# 나. 인정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### 2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#### 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 C의 남편인 D의 명의로 운영되는 E의 실질적 소유자이고, 피고 B는 원고의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이다. E의 장부를 담당하던 피고 B는 피고 C와 공모하여 E 사업용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40,084,0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는바,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위 돈을 횡령하거나 피고 B의 횡령을 방조하였으므로, 피고 C 역시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40,084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판단

갑 제1,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E의 사업용 계좌인 D의 계좌에서 2013. 10. 14.부터 2013. 11. 15.까지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40,084,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을나 제1, 2, 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피고 C은 E의 운영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, 위 거래 이전부터 동생인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통장거래에 응해왔던 것으로 보이며, 이에 관하여 원고 역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, E 통장에서 피고 C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의 전부가 피고 B에게로 갔고, 피고 C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 E이 운영될 당시 피고 C과 D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판사윤동연**

별지